

감사문

四

2. 실태

유역(지방)환경청은 전국 지정폐기물 62개 매립시설(사용 중 30개), 사용 종료 32개)에 대한 지도·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률 32기)에 대하여 지도·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31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[별표 11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를 5m 이하로 관리하고, 배출되는 매립시설 침

출수의 폐늘류, 비소, 구리, 카드뮴 등 오염물질을 월 1회 이상 측정하여 분기마다 유역(지방)환경청장에게 보고하며, 침출수를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.

1-
四
四
四

감사
초점 1
지정폐기물 배출시설의 침출수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

직장폐기물처분시설인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높을 경우 매립시설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방류될 경우 주변 토양, 수질이나 생태계 피해를 유발시킨다.

따라서 매립시설 설치·운영자는 침출수 수위를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침출수를 배출해 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고, 관할 유역(지방)환경청은 매립시설 설치·운영자가 침출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지도·점검하는 것이 최종 체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.

이에 따라 감사초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.

○ 훈령부유역(지방) [훈령장]가 매립시설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할 때 침출수 수위와 수질을 확인하는 경우 지도점검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다.

1) [별표 3] “지역별 기관별 매입 시설 현황”, 동일한 설치·운영자가 동일한 지역에 각각 다른 일자에 설치한 경우가 있으므로 매입 시설 설치·운영 단위는 46개(사용 중 27개), 사용 종료(19개)임

또는 사후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선·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등

매립시설 설치·운영자를 관리·감독하도록 되어 있다.

3. 문제점 및 결과

□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관리 등 부적정

지도·점검 시 침출수 수위 및 수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시옹 종료된 매립시설에 대하여 운영 중인 매립시설과 달리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를 관찰 유역(지방환경청)에 보고하도록 하지 않아 매립시설의 설치·운영자가 침출수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등 매립지 관리 부실

감사원 감사기간 중 62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와 침출수 수질분석 결과 보고여부 등을 확인하고, 21개²⁾ 침출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·분석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.

그 결과 [별표 4] “침출수 관리기준 위반 현황” 및 [표 19]³⁾와 같이 6개 매립시설(4개 운영 업체)³⁾의 침출수 수위가 기준을 최대 5.5배 초과하였고, 3개 침출수 처리시설(3개 운영 업체)⁴⁾ 방류수에서는 폐슬, 비소, 수은, 카드뮴 등이 배출 허용기준을 최대 4.2배 초과⁵⁾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[표 19]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관리기준 위반 현황

구분	수위기준 초과			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		
	(별표3) 연변호	운영업체명	관찰현	(별표3) 연변호	운영업체명	관찰현
운영 중	3	한국화학	금강유역환경청	7 (9-1, 9-2, 9-3 9-4 통합 처리시설)	수도● ■■■■■	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
사후관리	28 39	〃 〃	한강유역환경청	29	■■■■■	한강유역환경청
계(4)	6	4	-	3	3	-

자료: 환경부

그러나 위 9개 시설(7개 운영 업체)의 관찰 유역(지방)환경청은 매년 위 시설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하였으면서도 위와 같은 시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.

4. 원인

침출수의 수위는 변화가 심한데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2조 [별표 11] 및 제70조 [별표 19]의 규정에는 침출수 수위를 매립중인 시설은 5m 이하, 매립이 끝난 시설은 2m 이하로 유지하도록 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기록 및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아 침출수 수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기 곤란하게 되어 있다.

또한 사용 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3조에 명기마다 침출수 및 처리시설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측정하여 유역(지방)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정한 반면, 사용종료 된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시설 설치·운영자가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주기적으로 측정·판찰 유역(지방)환경청이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, 영업정지, 과태료부과, 고발 등 기 조치한 경우는 제외 5) BOD성분 등 유기물만 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고 있어 폐슬, 비소 등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되어 있음

그리고 통합지도·점검규정에 관찰 유역(지방)환경청의 정기 지도·점검 시 침출수 수위 측정이나 침출수 시료 채취·분석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막연히 “침출수 및 처리수 조사의 쟝정여부(조사주기), 조사항목, 처리결과 등 확인)” 항목만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.

[이에 따라 유역(지방)환경청이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를 측정하거나 직접 침출수 시료를 채취·분석하여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유역(지방)환경청별로 침출수 수위 및 수질에 대한 점검 내용도 서로 차이가 나는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.]

5. 관계기관 의견

환경부는 감사결과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침출수 수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유역(지방)환경청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영업정지 등 의법 조치하고, 정기 지도·점검 시 침출수 수위 및 침출수 측정·분석 여부,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·분석을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지도·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, 운영 중이거나 사용 종료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하여 침출수 및 지하수 측정·분석 및 주기적 보고 의무를 부여하여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[별표 3]

지정폐기물 매립시설 현황

(단위: m³, m²)

구분	연번호	매립시설명	소재지	면적(면적)	매립용량
1	1	-	경기도 화성시	17,470	243,700
2	2	-	충청남도 아산시	22,279	248,150
3	3	■■■■■	충청남도 보령시	39,113	1,144,700
4	4	■■■■■	울산광역시 남구	184,316	3,207,444
5	5	-	울산광역시 남구	62,620	1,267,879
6	6	-	경상북도 청원시 성진구	184,764	2,464,478
7	7	■■■■■	울산광역시 울주군	90,206	2,107,223
8	8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43,791	507,019
9-1	9-1	■■■■■ 구미 2-28구	경상북도 구미시	16,652	320,800
9-2	9-2	■■■■■ 구미 4-28구	경상북도 구미시	15,529	309,900
9-3	9-3	■■■■■ 구미 5-1공구	경상북도 구미시	26,576	662,100
9-4	9-4	■■■■■ 구미 5-2공구	경상북도 구미시	26,330	633,100
10	10	-	경상북도 고령군	18,000	301,860
시설	11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105,508	2,825,000
12	12	-	경상북도 구미시	50,800	771,340
13	13	-	경상북도 경주시	79,630	3,520,000
14	14	-	경상북도 경주시	29,609	1,147,953
15	15	-	경상북도 성주군	19,546	427,700
16	16	-	전라남도 광양시	146,804	1,037,969
17	17	-	전라남도 여수시	111,667	2,629,685
18	18	■■■■■	전라남도 여수시	14,319	144,622
19	19	-	충청북도 제천시	17,762	259,458
20	20	-	충청북도 충주시	17,394	326,000
21	21	-	전라북도 군산시	114,627	1,807,789
운영	22	-	경기도 파주시	12,063	143,740
증인	23	-	충청남도 아산시	4,891	19,238
지정	24	-	충청남도 아산시	9,818	73,563
폐기물	25	-	충청남도 금천시	22,723	249,759
지가	26	-	경상남도 양산시	1,476	9,550
매립	27	-	전라남도 여수시	16,883	160,000
시설					

구분	연번호	매립시설명	소재지	시공개시일	시공종료일 ^(*)
28	-	경기도 화성시	1987. 9.	1997. 1.	
29	-	경기도 평택시	2001. 6.	2011. 7. 4.	
30	-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	2001. 5. 17.	2011. 6. 30	
31	-	경상남도 경주시	1999. 12. 2.	2010. 3. 23	
32	-	경상북도 고령군	1995. 9. 5.	2007. 10. 31.	
33-1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1993. 7. 20.	1996. 3. 25.	
33-2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1995. 11. 29.	1997. 9. 10.	
33-3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1997. 10. 20.	2003. 2. 27.	
33-4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1998. 6. 08.	2001. 10. 11.	
33-5	-	경상북도 포항시 남구	2000. 6. 15.	2006. 9. 29.	
34	[주] 1(공구)	경상북도 구미시	2005. 11. 11.	2009. 10. 23.	
35-1	-	울산광역시 울주군	1993. 9. 11.	2000. 10. 9.	
35-2	-	울산광역시 울주군	1999. 12. 11.	2014. 5. 16.	
36-1	[주] 1차	울산광역시 남구	1995. 11. 02.	2011. 3. 17.	
36-2	[주] 2차	울산광역시 남구	1998. 6. 15.	2010. 3. 31.	
37	[주] 3차 매립장	울산광역시 남구	1997. 12. 11.	2010. 5. 31.	
38-1	-	울산광역시 남구	2000. 6. 16.	2013. 12. 27.	
38-2	-	울산광역시 남구	2003. 3. 13.	2013. 12. 27.	
39	[주] 4차	전라남도 여수시	1992. 6. 9.	1995. 6. 30.	
40-1	[주] 5(1차)	전라남도 여수시	1991. 9. 7.	1992. 10. 19.	
40-2	[주] 5(2차)	전라남도 여수시	1993. 1. 28.	1994. 5. 12.	
40-3	[주] 5(3차)	전라남도 여수시	1994. 5. 3.	1995. 2. 15.	
40-4	[주] 5(4차)	전라남도 여수시	1995. 1. 27.	1999. 8. 31.	
41	-	전라남도 광양시	1996. 9. 21.	2010. 11. 18.	
42-1	-	전라남도 광양시	2003. 1. 23.	2005. 4. 15.	
42-2	-	전라남도 광양시	2004. 9. 20.	2006. 9. 11.	
42-3	-	전라남도 광양시	2006. 4. 5.	2008. 7. 31.	
42-4	-	전라남도 광양시	2008. 3. 14.	2009. 7. 15.	
43	-	충청남도 서산시	1993. 6. 15.	2003. 2. 12.	
44	-	세종특별자치시	1999. 12.	2002. 2. 7.	
45	-	충청남도 당진시	2002. 3. 22.	2008. 5. 31.	
46	-	충청남도 당진시	2008. 7. 28.	2011. 6. 17.	

주: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의 경우 의무 사후관리기간 관리 필요에 따라 사용가

시·종료일 기재

자료: 환경부

[별표 4]

침출수 관리기준 위반 현황

(단위:m, mg/L, ton)

구 분	관할 환경청	[별표 3]의 연번호	매립시설명 (대표지번)	업체명	연체유형	침출수 수위 (m) ^(*)	색도 (300) ^(#)	파늘류 비소 (0.5)	분석 결과		
									구리 (3.0)	카드뮴 (6.0)	망간 (3.0)
낙동강유역	7	[주] 1(R)	[주] 1(R)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4.3	196.1	6,780	3,000	0.274	0.011	-
금강유역	3	[주] 2	[주] 2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27.4	-	-	-	0.038	-	-
한강유역	9-1	[주] 4(공구)	[주] 4(공구)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10.9 ⁽³⁾						
9-2	[주] 5(S)	[주] 5(S)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4.4	4	-	-	27,223	0.206	0.012	-
9-3	[주] 5-1(공구)	[주] 5-1(공구)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21.8 ⁽⁵⁾							
9-4	[주] 5-2(공구)	[주] 5-2(공구)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							
대구지방 환경청	9-5	[주] 6	[주] 6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1.5	1,047	2,340	-	0.555	0.012	-
9-6	[주] 7	[주] 7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5.95	139	-	0.26	0.633	0.271	-	-
9-7	[주] 8	[주] 8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(-)							
한강유역 환경청	29	[주] 10(W)	[주] 10(W)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1.5	1,047	2,340	-	0.555	0.012	-
28	[주] 11	[주] 11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5.95	139	-	0.26	0.633	0.271	-	-
사후 관리	39	[주] 12	[주] 12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2.2	50	0.037	-	0.962	0.004	-
40-2	[주] 13	[주] 13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3.5	-	-	-	-	-	-	-
40-3	[주] 14	[주] 14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2.6	-	-	-	-	-	-	-
40-4	[주] 15	[주] 15	1차 처리 후 연계 처리	3.5	-	-	-	-	-	-	-

주: 1. 침출수위 기준: 운영 중인 매립시설 5m 이하,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2m
이하

2.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2조 [별표 11]

3. 침출수 수위 초과로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기간: 2016. 10. 7.~2017. 4. 6.) 및
영업정지, 수사의뢰,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여 별도로 지적하지 않음

4. 상부 에어돔 봉괴(침출수 수위 확인 불가)로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(기간:
2016. 10. 7.~2017. 4. 6.), 수사의뢰, 영업정지,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여 별
도로 지적하지 않음

5. 침출수 수위 초과 및 유출 사고 발생에 따라 2016. 6. 28. 사용중지 및 개선
명령(기간: 2016. 6. 28.~2016. 12. 27.), 영업정지,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여
별도로 지적하지 않음

자료: 환경부

조치할 사항 한강유역환경청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50조 제3항의 규정을

위반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시설(사후관리)의 침출수 수위·배출허용기준을 준수
하지 않은 ქქ(한강유역환경청 관할), ქქ주식회사(대표이사 U 외 1, 한강유역
환경청 관할), 〇〇(대표이사 V,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), 주식회사 სს(대표이
사 I,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)에 대하여 침출수 수위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침
출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같은 법 제50조 제5항의 규정
에 따라 시정명령하시기 바랍니다.